

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김종무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380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년 3월 25일

발 의 자 : 김종무 의원(1명)

찬 성 자 : 이병도, 김화숙, 김제리, 고병국,
정재웅, 신정호, 이경선, 성흠제,
이영실, 김평남, 박기재, 이호대,
김경우, 임종국, 이태성, 김경영,
김호진, 정진술 의원(18명)

1. 제안이유

- 거주지의 재개발, 재건축 등으로 불가피하게 전출 후 재전입하는 참전유공자가 다수 있음에도 타 시·도에서 전입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만 지원 대상으로 인정하는 현행 조례는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이라는 조례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.
- 따라서, 타 지자체와의 중복 수령을 막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단위인 거주 '1개월'로 지원 대상 조건 및 수당 지급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지원대상의 범위를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, 계속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함(안 제3조)
- 타시도 전입자 등은 전입일로부터 1개월경과 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및 시행령 등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기 타 : 해당없음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3개월”을 “1개월”로 한다.

제5조제3항 단서 중 “발생일로부터 3개월”을 “전입일 또는 등록일로부터 1개월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지원대상) 예우 및 지원대상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, 계속 <u>3개월</u>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	<p>제3조(지원대상) ----- ----- ----- -- <u>1개월</u> ----- ---. ----- -----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5조(참전명예수당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수당 지급은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. 다만, 타 시·도 전입자와 주민등록 재등록, 신규등록자는 <u>발생일로부터 3개월경과 후</u> 지급한다.</p> <p>④·⑤ (생략)</p>	<p>제5조(참전명예수당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 <u>전입일 또는 등록일로부터 1개월</u>----- ---.</p> <p>④·⑤ (현행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3조(지원 대상) 및 제5조(참전명예수당)제3항의 서울시 거주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개정함에 따라 전입자 및 주민등록재등록, 신규등록자의 참전명예수당 2개월 지급분 추가 비용발생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가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(제3조제1항제2호)

-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중 전입자 및 주민등록재등록자, 신규등록자에 대한 별도의 현황이 없어 비용추계 곤란
 - 단, 참전명예수당 지급개시 사유는 전입과 주민등록 재등록·신규등록 뿐 아니라 65세 도래 사유가 있고 전입 등으로 인한 신규지급대상 인원수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임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

담당관 남승우

정책조사팀장 여차민

주무관 채소영

☎ 02-2180-7942

e-mail : liz1998@seoul.go.kr